윤리강령 11-1-5

규정번호 11-1-5
제정일자 2014.9.1
최근개정 2023.1.20
개정차수 2차 개정
관리부서 예산감사팀

명지전문대학은 기독교의 진리를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이래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오늘날 우리대학의 임무는 직면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면서 무한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모든 구성원은 사회적 의무와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제정・선포하여, 이를 대학 설립정신을 실현하는 규범으로 한다.

명지전문대학 윤리실천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윤리실천규범은 명지전문대학 윤리강령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교직원의 사회적 의무와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범위) 본 윤리실천규범은 명지전문대학(이하“대학”이라 칭함)의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한 대학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한다.

제2조의2(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육 및 연구윤리, 직무윤리, 성폭력 문제 등에 관하여 따로 개별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은 이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08.08.)

제2조의3(청렴의무)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신설 2023.01.20.)

제2장 직무수행 및 연구 윤리

제3조(직무수행 원칙)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반 규정에 근거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한다.

② 교직원은 대학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대학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기밀을 유지한다.

④ 직원은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계발에 힘쓰며, '교직원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4조(학사관리 의무 및 학생지도) ① 교원은 학생이 기본 교양과 전문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하도록 강의의 내실을 기하며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타 학사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② 교원은 인격자로서 학생에게 귀감이 되고, 학생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 학생은 스승에 대해서 기본예절을 갖추며, 학습의 주체로서 교수와 함께 수업을 포함한 모든 학사일정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윤리를 준수하며, 학칙을 준수한다.

제5조(공정성 및 합법성)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권과 관련된 일체의 청탁이나 부정·비리 등을 배척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 교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자 및 관련인 등에게 관련 법령이나 대학 규정 등에 위반되는 직무수행 지시를 금지한다.

제6조(연구 부정행위 금지) ① 교원은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교원은 연구를 통해 취득한 지적소유권 등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교원은 연구비의 수주와 집행에 있어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게 사용한다.

제7조(교내·외 활동) ① 교직원은 입시업무 및 교내 학사행정업무 등 교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봉사한다.

② 교직원은 교외 강의 및 창업활동 등 교외활동은 학칙을 준수하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제3장 자산 및 정보 관리

제8조(자산 및 정보 보호) ① 교직원은 대학의 유·무형 자산을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관리·보관한다.

② 교직원은 대학의 교육, 연구, 사무용을 포함한 일체의 유형적 재산과 직무발명 결과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무형적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회계 및 재무 관리) ① 교직원은 회계·재무 관련 서류를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작성하고 관리한다.

② 교직원은 회계·재무 관련 제반 정보를 포함한 대학 내 모든 정보를 관련 규정 및 문서에 정확히 반영 및 작성하여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조력한다.

제10조(예산 및 구매 관리) ① 교직원은 예산과 구매 관리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청탁이나 부정·비리 등을 배척하고, 대학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② 교직원은 대학이 시행하는 공사·용역·구매 등의 입찰·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③ 교직원은 연구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④ 교직원은 2항의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08.08.)

제4장 인격 존중

제11조(인격 존중 및 차별대우 금지) 교직원은 성별·연령·장애·지위·정치적 사상·종교·국적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한다.

제12조(폭행 금지) 교직원은 상호 간 또는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08.08.)

제12조의2(성적 희롱 금지) 교직원은 동료 교원·직원·학생에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신설 2022.08.08.)

제5장 위반행위의 신고(장신설 2022.08.08.)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사 담당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08.08.)

② 해당 부서는 인사담당의 요청이 있을 시 신고사항의 처리 경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신고인의 신분 보장)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08.08.)

제6장 기 타

제15조(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운영) ① 총장은 대학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운영 상황 전반

을 지속적으로 지휘·감독하며, 향후 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라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다.

② 총장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의2(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2조의 3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신설 2023.01.20.)

②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의 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타 규정 및 관련 지침의 준용) 이 강령 및 실천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강령 및 실천규범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강령 및 실천규범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2, 제10조제4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부 칙

본 강령 및 실천규범은 2023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3, 제15조의2)